안전은 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021. 1. 26. 공포)

*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1-교육혁신실-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주요내용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2021-교육혁신실-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벌내용은?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1. 26. 공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 1명 이상 ❷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 1명 이상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❶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❷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❸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❶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❷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❸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❶·❹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